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규정

2009년 4월 30일 개정

2010년 6월 06일 개정

2012년 4월 01일 개정

제 1장 개 요

제 2장 평가항목 및 점수배점

제 3장 평가방법

제 4장 대회코스 규정

제 5장 운행능력 규정

제 6장 산악독도 규정

제 7장 등산상식(이론) 규정

제 8장 장비점검 규정

제 9장 배낭무게 규정

제10장 응급처치 규정

제11장 암벽경기 규정

제12장 매듭법 규정

제13장 산악안전 규정

제14장 종합점수 산정

제15장 대회 상·벌 절차

제16장 경기 이의신청

제 1 장 개요

- 1-1. 대 회 : 같은 주최자와 같은 이름에 의해 동일기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기를 뜻한다.
- 1-2. 경 기 : 단일 경기방식을 말한다.
- 1-3. 시 합 : 각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전의 경우 하나의 단체 모두의 시합을 하나의 시합으로 칭한다.
- 1-4. 고 문 : 대한산악연맹 역대 회장을 역임한 분
- 1-5. 명예대회장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1-6. 대 회 장 : 대한산악연맹 회장
- 1-7. 부대회장 : 대한산악연맹 부회장
- 1-8. 참 여 : 시·도 연맹 회장
- 1-9. 본부임원 : 대한산악연맹 이사 및 감사
- 1-10. 대회본부장 : 주관 시·도 연맹 회장
- 1-11. 대회운영위원 : 주관 시·도 연맹 임원
- 1-12. 심판위원장 : 대한산악연맹임원(전문등산 위원장)
- 1-13. 심판위원 : 대한산악연맹 전문등산 공인심판중 당 대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임명 한 자
- 1-14. 루트세터 : 루트설정 책임자와 설치자로 나누며, 루트설정 책임자는 루트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암벽등반, 산악독도, 응급처치, 운행능력)
- 1-15. 기록및촬영 : 대회의 모든 기록을 전산처리하는 자 및 보관 하고자 하는 자료 촬영자
- 1-16. 대회방법 : 3인 1조 단체 경기
- 1-17. 출전부문 : 고등부(남, 여), 대학부(남, 여), 일반부(남, 여)
장년부(남, 여/ 대회 당해 연도 기준 만 50세 이상)
- 1-18. 선수자격 : 가. 시·도 연맹 회장이 추천한 단체나 팀으로 구성한다.(개별 팀 출전불가)
나. 전 부서 출전팀 구성은 단일(산악회) 팀으로 구성한다.(연합팀 구성불가)
단, 학생부(고, 대)는 예외로 연맹단위(연합 팀)로 구성이 가능하다.
- 1-19. 선수복장 : 가. 선수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어 출전해야 한다.
-복장문제에 의한 사고발생 시 선수자신이 책임을 진다.
나. 선수는 대회 주최자가 제공하는 대회 번호표를 반드시 대회기간동안 앞가슴 부위에 식별이 가능하게 항상 부착하여야 하며, 번호표는 수정하지 못한다.
두 개가 제공되면 하나는 등에 부착하여 앞, 뒤에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배낭을 지는 경우 배낭의 뒤쪽에 부착하여 뒤에서도 식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1-20. 대회장소 : 주관 시·도 연맹에서 대회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대산련 전문등산위원장에게 신청한다. 전문등산위원장은 관련위원들과 대회장소를 사전에 답사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승인하여 선정된다.

제 2 장 평가항목 및 점수배점

구분	운행 능력	산악 독도	등산 상식 (이론)	장비 점검	배낭 무게	응급 처치	암벽 경기	매듭법	산악 안전	종합 점수	총점
학생/일반	15	10	15	10	10	10	14	6	10	100	100
장년	15	10	15	10	10	10	-	6	10	86	100

제 3 장 평가방법

- 3-1. 부문별 팀은 3명으로 구성하여 단체행동으로 동시출발, 동시 도착해야 한다.
- 3-2. 출발순서는 대회 접수시 추첨한 번호가 각 팀의 출발순서가 된다.
- 3-3. 정해진 구간을 제한시간 이내 통과하고 각 지점(포인트)에서 팀 별로 심사를 받는다.
- 3-4.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를 규정대로 부착하여야 한다.
- 3-5. 각 팀은 지정 구간(포인트)도착시 심판에게 확인(카드인식)하고 평가시험 후 다음 구간으로 출발한다.
- 3-6. 등산대회 동일부문 동일점수에서는 운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팀이 상위 팀으로 한다.
- 3-7. 등산대회 운행 중 평가시험 시간은 운행시간에 포함한다.
- 3-8. 심사 방법은 본부가 규정한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3-9. 본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10. 대회 종료 후 종합평가를 거쳐 대회 본부에서 성적 순위를 발표한다.

제 4 장 대회코스 규정

- 4-1. 대회코스 설정은 도상거리 10km에서 ±2km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4-2. 오름 2회 이상 도상거리의 7~10%이내 설정, 내림 2회 이상 도상거리의 7~10%이내 설정한다.
- 4-3.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대회 심판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운행능력 규정

- 5-1. 등산대회 출발 시 대회본부에서 축척 1:15,000 운행지도를 지급한다.
- 5-2. 지도에는 운행구간별 규정시간이 기록되어 있다(규정시간 내 통과시 구간 15점 만점이다)
- 5-3. 구간운행 시간배점 :
(구간별 지정 소요시간<지도에 표기>÷각 팀의 소요시간)×15점 = 구간별 점수합계
- 5-4. 구간운행 중 중간 통과 확인체크구간 미 통과시 각 미체크 당 운행점수 -5점씩 감점한다.
- 5-5. 출발시간은 3명중 선두선수 출발(카드체크)시간으로 입력한다.
- 5-6. 운행구간 시간입력은 3명중 마지막 선수가 구간도착(카드체크)시간으로 입력한다.
- 5-7. 운행구간 중 길 찾기가 난이한 구간은 표식기(가로20cm X 세로20cm 빨강색)
진행방향 오른쪽3m방향 50~120cm 높이에 설치하고 지도에 ■(적색)로 표기한다.
- 5-8. 운행순서는 출발부터 포인트 순으로 하며 역 운행하여 포인트 체크시는 실격 처리한다.
- 5-9. 운행구간 소요시간 적용방법은 아래의 표를 기준하며 포인트 평가시험 시간을 더한다.
(단, 암벽평가는 제외)

$$\text{등산시간} = \frac{(\text{도상거리} \times \text{축척}) \times \text{거리계수}}{5\text{km} \times \text{속도계수}} \times 60\text{분}$$

기준		거리계수 (실제거리환산계수)	오름속도계수 (시간당 운행거리 감소계수)	내림 속도계수 (시간당 운행거리 증가계수)
구 간	경사10%이내	1.1	0.85	0.8
	경사10~15%이내	1.2	0.8	

경 사 도	경사15~20%이내	1.3	0.75	0.7
	경사20~25%이내	1.4	0.7	
	경사25~30%이내	1.5	0.65	
	경사30~40%이내	1.6	0.6	

※ 배낭무게 10kg기준, 1시간당 평지 보행속도 5km/hr인 사람 기준

제 6 장 산악독도 규정

- 6-1. 산악독도 평가는 등산대회 운행구간에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며, 사전답사 후 경기장을 확보한다.
- 6-2. 산악독도 경기는 운행 중에 대회코스에서 실기 또는 이론으로 실시한다.
- 6-3. 대회에 사용하는 지도는 기본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를 대회 조건에 맞게 책임위원이 편집하여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6-4. 산악독도의 방위각 실기문제는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상측정각도는 ± 2 도 이내는 정답, 실제 대회 현장측정은 ± 4 도 이내는 정답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은 기준 점수에 의거하여 차등 적용한다. (대회 장소에 따라 지형지물 및 대회코스, 출제문항에 따라 점수 기준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 6-5. 운행 중 포스트에서 문제해결 소요시간은 운행 소요시간에 포함된다.
- 6-6. 포스트에서 팀당 3매(1인1~5문항×3명) A, B, C형으로 평가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출제한다. (아래 내용 이외의 독도법 관련 문제를 포괄적 내용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

- 아 래 -

가. 자북선 긋기

- 1) 자북선에 대한 이해정도 점검으로 대회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지형도로 실시한다.
- 2) 편각도표에서 제시하는 도자각의 '분' 이하는 생략한다.
- 3) 선의 길이는 5cm 이상, 선의 수는 1개 이상, 3cm~4cm정도 간격, 머리에 자북선 표식기호.
- 4) 정답각도에서 1도 단위로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 5) 이론시험에서 별지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나. 도상 방위각 측정

- 1) 지도상에 제시된 지점의 방위각을 측정하는 능력을 점검한다.
- 2) 이론시험에서 별지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3) 도상방위각 측정은 ± 2 도 이내는 정답, 그 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다. 현장 방위각 측정

- 1) 포스트에서 심판이 제시하는 특징물의 방위각 측정능력을 점검한다.
- 2) 측정한 방위각 ± 4 도 이내는 정답, 그 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라. 자기위치 판정

- 1) 전, 후방 교차 법을 활용하여 지급한 지도에 자기위치를 정확히 표기하는 능력을 점검한다.
- 2) 선수가 활용한 특징물과 자기위치를 지도위에 실선으로 교차시켜 표시하고 방위각을 기입한다.
- 3) 그어진 자기위치 교차점이 정답지점의 3mm이내는 정답, 3mm초과는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마. 진행방위각 측정

- 1) 지급된 운행지도를 이용하여 현재 포스트에서 심판이 지시하는 방향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한다.
- 2) 진행방위각은 ± 4 도 이내는 정답, 그 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바. 축척의 이해와 거리측정

측척에 의한 도상거리 $\pm 2\text{mm}$ 와 실제거리 $\pm 50\text{m}$ 범위 이내는 정답, 그 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사. 등고선의 이해 : 경사도, 높이에 대한 이해, 곡단면도에 대한 적용 및 작도능력을 점검한다.

아. 지형도 읽기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 읽기 전반에 관한 이론 및 실기능력을 점검한다.

6-7. 답안지 및 점수관리

가. 출제문제와 해당점수의 적용 등은 심판위원장이 위임한 책임위원(책임심판)에게 있다.

나. 제출한 답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습기에 강한 펜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 볼펜으로 마감한 시험지에 추가로 수정한 경우 수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어진 선 중에서 최대한 틀린 것을 최종점수로 적용한다.

라. 답을 기록하고 나서 고쳐야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책임심판에게 답안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답안지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단, 최초 주어진 시간의 적용은 변하지 아니한다.

마. 답안지가 훼손되었거나 수검자 성명 등 기록사항의 누락,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한 글씨의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독도에 응시한 팀에게는 해당대회에 부여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제 7 장 등산상식 (이론) 규정

7-1. 등산대회 운행 중 등산상식(이론) 시험에 응한다.

7-2. 팀당 30문항(1인 10문항×3명) A, B, C형으로 평가한다.

7-3. 부정행위(시험도중 타인에게 묻거나 메모지를 보는 행위)가 있을시 부정행위를 한 팀의 점수는 0점으로 하고 실격처리 한다.

7-4. 이론시험 범위는 등산의 전반적인 것으로, 대회 1개월 전에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8 장 장비점검 규정

8-1. 등산대회 운행 중 장비점검 평가를 실시한다.

8-2. 대회에 필요한 장비는 산행지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장비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대회 1개월 전에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 준비물로 한다.

8-3. 장비점검은 게시항목 다수 중 특정물 3가지만 검사하고 장비 각1개 부족시 -3점씩 감점한다.

제 9 장 배낭무게 규정

9-1. 배낭 무게는 팀당 30kg이상이어야 한다(만점 30kg에서 1kg미만마다 1점씩 감점한다)
(예: 29kg -1점, 28kg -2점, 27kg -3점, ...)

9-2. 운행 출발하여 도착까지 수시 평가한다(단, 배낭 속에는 등산장비만 인정한다)

제 10 장 응급처치 규정

10-1. 정 의 : 응급처치 평가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본상식과 처치능력을 평가한다.

10-2. 평가심판 : 대회전에 심판위원장이 해당분야 공인심판, 운영위원을 배정하여 평가에 임한다.

10-3. 평가장소 : 대회 운영본부에서 정한 일정장소에서 각 부문별로 책임심판이 결정한다.

10-4. 평가방법 : 실기평가 또는 필기평가로 구분한다.

*. 응급처치 출제 범위 내에서 책임심판이 선정한 실기문제 또는 필기 문제를 참가선수 3명에게 실시한다.

10-5. 평가범위 :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서 실기평가와 필기평가를 실시한다.

제 11 장 암벽경기 규정

제1조 등반벽

- 11-1. 대회경기 등반벽은 높이 7m이상, 폭 7m이상으로 한다.
- 11-2. 등반벽 전체표면을 등반에 허용하며 사전에 사용이 금지된 벽면
(예: 벽 측면 가장 상단의 가장자리 경계선으로 구분한 표시선, 루트설정 책임자가 금지하는 부분등)은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경기방식

- 11-3. 대회경기는 3명이 한개 팀으로 등강기(어센더)이용 등반 후 하강하는 방식으로 하며, 오픈방식으로 한다.
- 11-4. 각 팀 3명의 선수가 순차적으로 등반 한다.(단, 순서는 각 팀이 알아서 정한다.)
- 11-5. 등반시작은 선수가 출발선 안으로 들어오면, 전자칩(대표칩)으로 체크(카드인식)하고 3명이 동시 출발한다.
- 11-6. 같은 팀 선두 선수가 등반을 완료하면 다음 선수가 출발한다.
- 11-7. 선두 선수가 등반 중(출발시)에 로프가 끌려 올라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팀 대기 선수가 로프를 잡아 줄 수 있다.
이때 대기 선수가 등반 로프에 등반 준비를 위한 등강기를 설치해도 무방하다.
- 11-8. 배낭은 어떤 방식이던 휴대하여야 하며, 홀링 방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단, 배낭이 먼저 가는 것은 함께 가는 것으로 인정 한다.
- 11-9. 등반종료는 선수가 하강을 완료 하고 줄(로프)에서 하강기를 이탈 후 심판이 완료 하여야 등반이 종료되며, 선수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착지점 으로 이동하여 각자 소유한 전자칩으로 체크(카드인식)하여 각 선수는 경기가 종료된다.
- 11-10. 경기 종료 후 선수는 대회장으로 진입이 불가하며, 이때 같은 팀의 선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그 즉시 경기 중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된다. 대표칩을 제외한 전자칩은 도착 지점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11-11. 심판은 출발 시 배번과 등반코스, 출발시간, 도착 시 도착시간을 수기로 기록 한다.
- 11-12. 경기 중 전자칩의 망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
- 11-13. 전자칩의 전산상의 오류로 인한 경우 심판은 대회 표준 시간을 수기로 기록하며, 이 기록이 최종 공식 기록이 되고, 이로 인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
(대회 표준 시간은 심판위원장이 결정한다)
- 11-14. 각 팀은 배낭30kg를 메고 경기에 임한다.

어센딩 등반 장애물 통과 규정 (남자 일반부 적용)

1. 등반 로프에 등강기 2개 설치한다.
2. 등강기에 확보줄을 각각 설치한다. (잠금 카라비너 사용)
3. 장애물 통과 시 로프 이탈 방지용 카라비너를 회수 후 등강기를 이동하고 로프 이탈 방지용 카라비너를 클립 한다.
4. 두 번째 등강기 이동은 첫 번째 등강기 이동방식 (1.2.3)순으로 장애물을 통과시킨다.

제3조 안전관련 기준

- 11-15. 등반에 사용하는 장비는 UIAA, CE, KS 규격제품 과 심판위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11-16. 선수는 안전벨트, 헬멧, 기타 장비 및 복장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장비의 결함에 의해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
- 11-17. 승인되지 않은 장비나 매듭 또는 허용되지 않은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등반복(반바지, 등) 대회 번호표의 수정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들은 선수의 실격 사유가 된다.
- 11-18. 장비는 각 팀별 준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11-19. 선수는 등강기 중 1개 이상은 어센더류의 등강기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 11-20. 선수는 등강기를 개인이 준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 11-21. 노후화된 장비나 심각하게 훼손된 장비는 심판이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다.
- 11-22. 등강기 사용시 로프이탈 방지를 위하여 각 등강기에 로프이탈 방지 카라비너를 설치해야 한다. 단, 등강기에 로프이탈 방지 카라비너 홀이 있는 등강기에 한 한다.
- 11-23. 등강기로 등반시 자기 확보 줄을 각 등강기에 각각 설치해야 된다.
- 11-24. 등강기로 등반 후 벽 상부에 도착 후에는 자기 확보를 먼저하고 등강기를 해체하고 등반 완료 신호를 한다. 이때 심판이 완료 신호를 하여야만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다.
- 11-25. 등반 완료 후 하강지점으로 이동하여 하강준비를 하며, 이때에도 자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선수는 하강준비를 마친 후 심판에게 하강신호를 한다. 이때 심판이 하강 신호를 하여야만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다.
- 11-26. 심판 혹은 안전요원의 확인 없이 개별 행동시에는 경고가 주어지며, 안전규정 위반시 적색카드 실격도 될 수 있다.
- 11-27. 경기 중 장비를 떨어뜨리는 경우 경고가 주어지며, 각 팀 총점에서 1점 감점이 주어진다.

제4조 경기구역

- 11-28. 대회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심판위원장이 공지한 출발 시간 5분 전까지 경기구역에 입장하여야 한다. 미 입장 시 그 팀은 총점에서 5점 감점 처리되며, 출발 순서는 마지막으로 한다.
- 11-29. 경기구역 안에서는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행위,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그 즉시 경기 중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된다.

제5조 등반 전 준비

- 11-30. 선수가 등반을 위해 최종 준비하는 이동구역은 따로 준비하거나 경기구역 자체가 될 수 있다.
- 11-31. 경기장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으면 안내 요원 외에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없다. 불필요한 지연은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11-32. 각 선수는 등반에 필요한 준비(등반장비 및 배낭등)를 마무리하고 대기한다.
- 11-33. 등반 참가 기준은 각 팀이 필수 장비를 착용하고 휴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벽 보수

- 11-34. 루트 설정책임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루트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경험 있고 숙련된 유지팀을 확보한다. 안전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심판위원장은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경기장으로 부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1-35. 심판의 지시에 따라 루트설정 책임자는 홀드 및 등반벽의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보수가 끝난 후에 심판위원장은 보수의 결과가 다음 선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한지 조언한다. 심판위원장의 진행, 정지 또는 재시작 결정은 항상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해 서는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7조 기술적 사고

- 11-36. 기술적 사고란 등반벽의 변형, 파손, 그리고 선수의 행위에 의하지 않는 선수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말한다.
- 11-37. 기술적 사고가 심판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등반에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그 선수는 등반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기술적 사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에는 그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11-38.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등반에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심판은 기술적 사고를 선언할 것인지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 선수의 등반을 종료하거나 선수에게 등반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이 경우 기술적 사고를 다루는 규정에 따라 그 선수에게 다음 기회를 허락한다.
- 11-39. 기술적 사고가 선수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선수가 등반중이면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의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심판의 동의를 받아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지한다. 만약 선수가 계속 등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술적 사고에 대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11-40.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부당한 위치에 있으면 심판은 지체없이 결정을 내리고 이는 최종이 된다. 선수가 추락하고 기술적 사고를 주장한다면, 그 선수는 즉시 특별한 격리구역으로 인도되어 기술적 사고로 주장한 결과를 기다린다. 루트 설정책임자는 빠른 시간 안에 청구된 기술적 사고를 확인하고 심판과 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심판위원장의 결정은 최종이 되고 더 이상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11-41. 기술적 사고로 확인된 선수는 분리된 격리구역에서 휴식시간이 부여되며, 대회 조직위 위원 이외는 어떠한 사람도 접촉할 수 없다. 선수는 사고가 복구되기 까지(약 20분간의) 휴식을 제공한 후 재시도하며 그 중에서 좋은 등반성적을 최종성적으로 부여한다.

제8조 출발순서

- 11-42. 부문별 주최 측에서 뽑기로 결정된 대회번호 순서대로 출발한다.
- 단, 운행 중 평가시는 부문별 도착순으로 평가한다.

제9조 평가 방법

- 11-43. 등반경기 평가점수는 14점으로 등반 참가 기본 점수는 5점이 주어지며 등반 만점시간(당일공지) 이내 등강기로 완등한 후 하강이 완료되면 선수1명당 3점(3명X3명=9점)을 획득한다.
- 11-44. 등반평가 만점시간을 초과한 팀은 30초 마다 1점씩 감점되고 1인 최대 3점 감점이 적용 됨.
- 11-45. 등반평가 만점시간을 초과한 후에도 대기선수가 있다면 1인 3점 감점을 적용 받고 다음 구간으로 출발한다.
- 11-46. 등반 경기 중 등반포기, 추락, 2분 이상 진전이 없을시 주최측 안전팀의 도움으로 내려온다. 이때 등반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11-47. 등반평가 만점시간은 팀별로 주어지며, 현장 사정에 맞추어 심판위원장이 당일 공지한다.

제10조 등반 장비

11-48. 아래의 필수 장비를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 시에는 심판이 등반을 불가 할 수 있다.
(개인장비)

순번	장 비 명/규격	수량	비고
1	안전벨트	1	
2	헬멧	1	
3	하강기	1	2줄 하강이 가능한 것
4	등강기	2개	어센더류 1개이상
5	확보줄/규격품	2개이상	등강기 및 자기확보용
6	잠금카라비너	3개이상	자기확보 및 하강기용
7	카라비너	3개이상	

11-49. 등반장비 중 주마스텝, 줄사다리(Ladder), 자동확보줄등의 장비는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하여 도 된다.

제 12 장 매듭법 규정

- 12-1. 등산대회 운행 중 매듭법을 평가한다.
- 12-2. 팀당 3개 문제 (1인 1문제×3명)로 평가한다.
- 12-3. 평가 중 타인에게 묻거나 도움을 지원 받으면 실격처리 된다.
- 12-4. 평가시험 범위는 등산교재 내에서 출제한다.
- 12-5. 총 평가점수는 6점이며, 문제당 2점으로 평가한다.

제 13 장 산악안전 규정

- 13-1. 등산대회 운행 중 평가한다.
- 13-2. 평가항목은 등산장비의 규격품(품질, 모양, 성능) 노후화 상태, 안전수칙 등 이다.
- 13-3. 산악안전 평가 세부항목은 대회 1개월 전에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14 장 종합점수 산정

- 14-1. 종합점수는 시·도 연맹별로 부문별 출전 팀이 얻은 점수(참가점수+취득점수)에 의해 산정한다.
- 14-2. 대회 취득점수의 배점은 아래 표-2와 같이한다. 대회 참가 시 기본 10점을 부여한다.
- 14-3. 참가점수는 부문별 참가팀 수가 많은 순서로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며, 10위 이후의 경우에도 예도 기본점수로 1점을 부여한다.
 - 연맹 별 참가 팀 수가 동수일 경우 같은 등위를 부여하며 차 등위는 건너서 부여한다.
(예 : 두 연맹의 참가 수가 같아서 2위를 한 경우 2팀에게 9점을 부여하고 다음 연맹은 4위를 적용하여 7점을 부여함)

* <표-1>참가점수 배점 표: 연맹별, 클래스 별 참가 팀 수를 등위를 따져 차등점수(불참 시 0점)

구 분	남고부	여고부	남대부	여대부	남일반부	여일반부	남장년부	여장년부
1 위	10	10	10	10	10	10	10	10
2 위	9	9	9	9	9	9	9	9
3 위	8	8	8	8	8	8	8	8
4 위	7	7	7	7	7	7	7	7
5 위	6	6	6	6	6	6	6	6
6 위	5	5	5	5	5	5	5	5
7 위	4	4	4	4	4	4	4	4
8 위	3	3	3	3	3	3	3	3
9 위	2	2	2	2	2	2	2	2
기본	1	1	1	1	1	1	1	1

* <표-2>취득점수 배점 표(출전 팀의 등위로 얻은 종합점수 적용)

구 분	남고부	여고부	남대부	여대부	남일반부	여일반부	남장년부	여장년부
1 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위	80	80	80	80	80	80	80	80
3 위	60	60	60	60	60	60	60	60
4 위	40	40	40	40	40	40	40	40
5 위	35	35	35	35	35	35	35	35
6 위	30	30	30	30	30	30	30	30
7 위	25	25	25	25	25	25	25	25
8 위	20	20	20	20	20	20	20	20
9 위	15	15	15	15	15	15	15	15
기본	10	10	10	10	10	10	10	10

제 15 장 대회 중 상 · 벌 절차

- 15-1. 심판위원장은 경기지역(경기등록소, 격리지역, 이동지역, 경기장)내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판결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15-2. 심판은 기 명시된 경기규정 위반시 대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가. 구두경고 : 다소 미미한 위반시 1차로 주의를 주고 기록함
 - 나. 황색 카드 경고 : 3항에 세부사항을 별도 규정함
 - 다. 적색 카드 경고 : 5항에 세부사항을 별도 규정함
- 15-3. 황색 카드의 경고는 다음과 같은 규정위반 시 적용한다.
 - 가.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출발, 중지, 복귀, 지연행위 등)

- 나. 심판에 대한 모독 행위(불쾌한 언어의 구사나 지나친 어필 등)
 - 다. 산악인이며, 스포츠 인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행동
 - 라. 공식 식전, 식후 행사에 불참
 - 마. 지급된 번호표의 미착용
- 15-4. 황색 카드에 의한 경고를 받은 팀은 타 팀과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를 부여받는다.
한 경기에서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실격처리 되고 다음 대회에 1회 참가할 수 없다.
- 15-5. 다음의 규정위반은 적색 카드로 실격 처리하며 즉시 경기장 이외 지역으로 내보낸다.
- 가.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 등반할 루트에 대한 정보 수집 행위
 - 나. 자신의 등반순서 직전까지 장비의 미착용 및 미출전
 - 다. 안전을 해 할 수 있는 장비(복장 포함)를 착용한 경우
 - 라. 격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통신수단의 사용
 - 마.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 타 선수와의 정보수집 및 교환
 - 바. 등반을 준비하거나 등반중인 선수를 방해하는 행위
 - 사. 심판 또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위해 위협 행위나 모독 행위
 - 아. 산악독도 대회지역에 대회전 진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 자. 산악인(스포츠 인) 답지 않은 행위로 대회권위를 실추시키거나 진행을 방해한 행위
 - 차. 다른 선수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지시, 소란, 욕설, 모욕 등)
- 15-6. 황색 카드 혹은 적색 카드를 받은 팀에 대해서는 즉시 심판위원장은 관련심판과 상의하여 해당팀 임원진 또는 팀 에게 문서로 전달하고, 대회 공식기록으로 남긴다.
추가로 제재가 필요할 경우 기록과 함께 세부적 보고서, 증거를 첨가하여 위원장의 의견서를 대회장에게 제출하여 처리를 요청한다.
- 15-7. 팀의 관련임원(감독, 코치진)은 선수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한다.
- 15-8. 심판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격리구역과 이동지역을 포함하는 경기지역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시가 완료 될 때까지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 15-9. 상별 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가. 심판위원장, 전문등산위원회 운영임원(장, 부, 총무)과 대회의 책임심판으로 구성한다.
 - 나. 의결은 참가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 16 장 경기 이의신청

제1조 개요

- 16-1. 기록실은 각 분야별 점수집계가 종료되면 즉시 점수와 답안을 수합하여 예정고시를 한다.
예정고시를 한 성적이나 문제의 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게시판에 고시되는 예정고시를 확인하는 즉시 20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16-2. 기록실의 예정고시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1차 알림이며 최종이 아니다. 예정고시 후 20분이 경과하여 위원장이 확정고시를 한 경우 변경이 불가하다.
- 16-3. 이의신청은 지정서식으로 작성하여, 팀의 운영임원(감독, 코치)이 직접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16-4.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예정고시 시간은 확정 발표시까지 정지된다.

제2조 대회 이의심사

- 16-5. 지정서식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대회의 책임심판으로 구성된 심판회의를 소

집하여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

- 16-6. 문제점이 수정된 경우 전체 선수단에게 알리고 예정고시를 수정하여 다시 공지한다.
이 때 부터 공지시간은 다시 20분으로 한다.
- 16-7.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팀에게만 알리고, 정지된 시간부터 남은 시간만을 게시하고 확정
고시 한다.
- 16-8. 이의 신청 시 비디오 기록을 활용하는 판독은 공식으로 인정한 비디오 기록만이 이용될 수
있으며 판정을 위한 공식 비디오 판독은 심판위원장과 해당심판으로 제한한다.

제3조 중앙 징계위원회에 상고

- 16-9. 심판위원장은 규정위반사항이 K.A.F의 징계위원회가 심사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문제는 심판위원장의 보고서와 팀의 책임자 사이의 서면 교신 사본 및 관련증거를 첨부하여
중앙연맹에 제출한다.

제4조 중앙 징계위원회

- 16-10.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는 K.A.F의 “정관”에 따른다.

제5조 이의신청 수수료

- 16-11. 이의신청 수수료는 전문등산위원회가 매년 대회 전 발표하는 금액에 따른다.
- 16-12. 수수료는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반환하되 기각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 16-13. 기각된 수수료의 소유권은 전문등산위원회가 가진다.



제 7회 경기도지사기 종합등반대회

□ 장소 : 양주시 덕계공원 일원
□ 주최 : 양주시산악연맹

□ 일시 : 2025년 11월 16일
□ 주관 : 경기도산악연맹

이 의 신 청 서

신청금 : 100,000원

신청자 성명		출전부분		소속단체	
소 속 시 도		코 치		감 독	
신 청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이 의 내 용					

이 의 결 과 통 보

접수자 성명		소속시군	
이의판정 심판	심판위원장 : 심 판 :		
이의신청 결과			

심판 위원장 :
서 명 :



경기도산악연맹